



Agriculture and Markets

The industry specific guidance below was developed by the Department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is no longer mandatory. These archived documents are made available as a public reference and resource only.

Industry partners should refer to [New York Forward Guidance](#)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s://agriculture.ny.gov/coronavirus>.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소매 식품 시설에서 판매하는 달걀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임시 지침**
2020년 4월 28일

이 임시 지침은 소매 식품 시설에서 판매되는 달걀에 대한 특정 포장 및 라벨 부착 요건에 대한 일시적인 유연성을 제공하여 코로나19(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서 증가하는 달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뉴욕주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선포한 기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본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지만 비상 사태 기간을 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배경

소매 식품 시설은 뉴욕주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하여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21조 101장을 포함한 연방 식품 라벨 의무 사항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소매용 라벨을 부착한 상자에 포장된 달걀을 공급받습니다. 식품 라벨 규정은 달걀 등급(A&ML 160-c항 및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90.1[h]항 참조), 포장 상자 내 달걀 입수(NYCRR 1조 221.5항 세부조항[f] 및 [g] 참조), "냉장 보관" 경고(NYCRR 1조 271-2.2[c]항 참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달걀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에게 공급할 추가 달걀은 있지만, 적절한 라벨을 부착한 소매 포장재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지침](#)에 따라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AGM)는 현재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달걀의 특정 포장 및 라벨 부착 요건의 유연한 적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포장 및 라벨 부착에 대한 지침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기간 중 달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AGM은 FDA 임시 포장 및 라벨(Temporary Packaging and Labeling)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소매 식품 업체는 구매 시점에 다음의 정보를 분명히 표시합니다(카운터 카드, 사인, 제품에 부착된 태그 또는 기타 적절한 장치 등).
 - 신분 증명.
 - 제조업체,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 및 위치.
 - 모든 *살모넬라*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달걀에 대한 안전 취급 지침.
- 다수의 공급업체에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판매하는 달걀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달걀에 어떤 판매 시점 라벨이 적용되는지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 달걀은 완전히 닫히는 상자 또는 판형 포장재(예를 들어, 30구 제품은 30알을 담을 수 있는 판형 포장재에 담아 판매)에 담아 판매합니다.
- 구매 시점에 달걀의 영양 정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소매용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현재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실용적인 범위에서 본 지침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늘리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의 밀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 2세 이상이고 페이스 커버 착용에 의학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17호 및 202.18호](#)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마스크 또는 페이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2020년 4월 17일 발표된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페이스 커버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 202.17호 및 202.18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on Executive Orders 202.17 and 202.18 Requiring Face Coverings in Public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pril 17, 20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행정 명령 202.16호](#)에 따라 대중과 접촉할 때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필수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4월 14일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에서 대중과 접촉하는 공공 및 민간 근로자를 위한 페이스 커버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202.16호에 대한 중간 지침\(Interim Guidance on Executive Order 202.16 Requiring Face Coverings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Interacting with the Public During the COVID-19 Outbreak, April 14, 202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료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COVID-19 Website
<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COVID-19 Website
<https://agriculture.ny.gov/coronavirus>

United Stat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VID-19 Websit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